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규정

제정 1998. 4. 6.
제30차 개정 2021.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장학금

제3조(장학금의 구분)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가. 면학장학금
 - 나. 봉사 장학금
 - 다. 외국인장학금
 - 라. 조교장학금(개정 2019.4.1)
 - 마. 교직원장학금
 - 바. 교직원가족 장학금(개정 2015.03.01)
 - 사. 협약장학금
 - 아. 특별장학금(개정 2011.5.3, 2012.1.18, 2012.10.11, 2016.4.19, 2018.5.1, 2018.12.20., 2019.4.1)
 - 자. 학술연구장려 장학금
 - 차. 화목장학금
 - 카. 자아실현장학금
 - 타. 공로장학금 (개정 2008.4.24)
 - 파. 연구보조장학금(신설 2015.03.01)
 - 하. 동문장학금(신설 2017.05.01.)
- 거. 학업장려장학금 (신설 2021.12.15)

2.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장학 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을 의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장학생의 선정

제4조(장학생의 선정) 교내장학생 선정은 매 학기 초로 하며 해당학과(전공)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교내장학생 선정기준) 교내장학생 선정기준은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08.4.24, 2009.1.8, 2010.2.9, 2011.5.3, 2012.1.18, 2012.10.11, 2012.12.24, 2015.01.12, 2016.4.19., 2019.4.1., 2021.12.15)

제6조(교외장학생의 선정기준) 교외장학생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외 장학기관에서 해당학과의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2. 해당학과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수혜자의 학과 간 비율을 참작하여 부원장이 배정하고 학과(전공)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3. 교외 장학기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조 개정 2006.8.1.)

제4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제7조(장학금 신청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장학수혜자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장학금 대상자는 재직증명서 1부 (개정 2016.4.19)
교직원 자녀 장학금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개정 2016.4.19)
2. 외국인 장학금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여권사본 각 1부 (개정 2016.4.19)
3. 기타 장학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교내장학금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로 한다.

2. 교외장학금 지급 시기는 교외장학기관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3. 교내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해당 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4. 삭제 (2016.4.19)

제9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근신 이상의 징계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장학수혜자로 선정된자가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는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수혜기간의 제한) 1.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재학연한으로 한다.(개정2019.11.14)
2. 동일 수혜기간내의 장학금은 1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면학 장학금과 외국인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개정 2011.5.3, 2012.1.18., 2012.10.11, 2015.03.01, 2017.3.1)

제10조의2(장학금 수혜자의 논문제재 의무) 별표1의 학술연구장려장학금 및 연구보조장학금 수혜자의 논문제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의한다.(조신설 2017.3.1, 2019.4.1)

제11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변경규정 시행 당시의 고시장학금제도는 2002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되나, 이전 입학생으로 고시장학금 수혜자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입학한 고시장학금 수혜자는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습보조비를 수업연한동안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부터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6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학술 연구 장려 장학금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조교장학금 B는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외국인장학금은 2009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협약장학금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장학금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장학금은 2013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장학금은 2013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에 의한 별표1의 특별장학금은 2015학년도 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5조(교내장학생 선정기준)에 의한 별표1의 연구보조장학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교내장학생 선정기준) 별표1은 201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원교학부-23, 2017.01.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교내장학생 선정기준) 별표1은 2017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교내장학생 선정기준) 별표1, 별표2는 2017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579, 2021.12.15.)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학생 선정 기준(개정 2012.12.24, 2015.01.12, 2015.03.01., 2016.04.19., 2017.03.01, 2017.05.01, 2017.08.01, 2018.12.20, 2019.04.01, 2020.10.14., 2021.06.16., 2021.12.15)

◎ 일반대학원

장 학 종 별	수 혜 자 격 기 준	지 급 액
학술연구장려장학금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학생으로 재학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100%
연구보조장학금	-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부 또는 대학원 해당학과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70%
조교장학금	- 본 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	수업료의 60%
교직원장학금	-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근무 중인 교직원에 한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60%,
교직원가족장학금	- 본교 법인에 근무하는 대학 및 부속 한방병원과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수업료의 60%
외국인장학금	1.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수업료의 50%
	2.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상 취득 또는 영어 능력시험(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으로 입학 한 자	수업료의 60%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	수업료의 50%
	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	수업료의 40%
자아실현장학금	- 장애인(신체등급 1-3등급) - 장애인(신체등급 4-6등급)	수업료의 50% 수업료의 30%
협약장학금	-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업체)에 근무하는 자	수업료의 40%
화목장학금	- 한 가족(가족관계증명서)이 본 대학 또는 대학원에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수업료의 30%
동문장학금	본 대학·대학원 또는 상지영서대학교를 졸업한 자	수업료의 40%
특별장학금	1.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공기관 직원 및 전·현직 사립학교 교직원, 예비역부사관급이상, 퇴직공무원·군무원(6급이상), 판·검사, 변호사, 법무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50%
	2. 본교 부속 한방병원 수련의 및 임상연구원	수업료의 30%
	3. 자영업자 및 법인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수업료의 30%
	4. 사회복지학과(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가입기관 종사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50%
	5. 국가보훈대상자(직계가족 포함)	수업료의 30%
	6. 경제적곤란자(재산세(년) 및 건강보험료(월) 10만원 이하) (단, 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 포함)	수업료의 50%
	7. 상지가족회사의 임직원 및 본교에 위촉된 강사	수업료의 30%
	8. 법령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외자 및 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40%
공로장학금	-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	수업료의 50%
면학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서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수업료의 30% 이내
봉사장학금	- 학생회 활동이 모범적인 자,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특수대학원 포함)	수업료의 30% 이내

* 교직원장학금, 교직원가족장학금, 조교장학금, 협약장학금,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기준일은 재직(계약)기간이 해당학기 개학일 이후까지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지급 기준일 후 빌령(재직)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 상기 지급액은 입학금 제외이며 수업료의 해당 %를 적용한다.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특수대학원

장 학 종 별	수 혜 자 격 기 준	지 금 액
조교장학금	- 본 대학에 근무 중인 조교	수업료의 60%
교직원장학금	-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근무 중인 교직원에 한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60%,
교직원가족장학금	- 본교 법인에 근무하는 대학 및 부속 한방병원과 상지 대관령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수업료의 60%
외국인장학금	1.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수업료의 50%
	2.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생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상 취득 또는 영어 능력시험(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으로 입학 한 자	수업료의 60%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	수업료의 50%
자아실현장학금	- 장애인(신체등급 1-3등급)	수업료의 50%
특별장학금	1.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공기관 직원 및 전·현직 사립학교 교직원, 예비역부사관급이상, 퇴직공무원·군무원(6급이상), 판·검사, 변호사, 법무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50%
	2.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가입기관 종사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비정규직 포함)	수업료의 50%
	3. 경제적 곤란자(재산세(년) 및 건강보험료(월) 10만원 이하) (단, 기혼자는 배우자, 미혼자는 부모 포함)	수업료의 50%
공로장학금	-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	수업료의 50%
학업장려장학금	- 특수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의 40%

* 교직원장학금, 교직원가족장학금, 조교장학금,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기준일은 재직(계약)기간이 해당학기 개학일 이후까지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지급 기준일 후 발령(재직)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 상기 지급액은 입학금 제외이며 수업료의 해당 %를 적용한다.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별표2】 장학금 수혜자의 논문제재 의무(신설 2017.3.1, 2017.8.1, 2019.4.1, 2020.10.14)

구분	학술연구장려장학금	연구보조장학금
수혜자격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학생으로 재학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부 해당학과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금액	수업료의 100%	수업료의 70% (2016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생 100%)
논문제재 의무	국제전문학술지(A.H.C.I / S.S.C.I / S.C.I / S.C.I.E)에 제1저자 논문 1편 의무 게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박사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석사는 공동저자 논문 1편 의무 게재
	단, 게재된 논문에는 상지대학교대학원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이 표기 되어야 함.	
논문제재일	해당 과정 입학 후 부터	
장학금 반환 및 규제	<p>1. 논문 미제출자에게는 학위수여를 유예하고 논문 제출이 완료된 후에 학위를 수여한다. 단, 학술연구장려장학금 수혜자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금 이상에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연구보조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지급된 장학금의 30%를 환수한 후 학위 수여를 한다.</p> <p>2. 논문 미제출자가 있는 해당 교수는 3년간 장학생 추천을 할 수 없다. 단, 의무가 완료되면 적용하지 아니 한다.</p> <p>(이 항목은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p>	